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64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엄태영 · 조지연 · 박덕흠
서천호 · 김재섭 · 강명구
이만희 · 박성민 · 고동진
박정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인이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보전산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임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인이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 조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생략)</p>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u>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u>한다.</p> <p>④ (생략)</p>	<p>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u>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u>-----</p> <p>-----<u>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u>-----.</p> <p>④ (현행과 같음)</p>